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정산식을 적용함 (안 제4조).
- 나.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별표 1의 비교 제1호).

III.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명이 2005. 1. 14(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조문내용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소하천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을 적용하는

조문내용과 관련하여 2006. 10. 4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 제정(1995. 12. 30 조례 제306호) 이후 구의 지역특성상 소하천을 점용·사용하여 경작하거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이 개정(안) 내용과 같이 경작을 제외하고 골재채취료의 규정만을 존치시키는 것은 향후 점용료 부과대상이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명문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第22條 (占用料등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 등 小河川產出物의 採取料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 등에 상당하는 金額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07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 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연도의 점용료·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04)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부과·징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